

제188회 제2차 정례회  
산업건설위원회 (2012.12.14)

# 조례안 검토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  
[전문위원 장정옥]

<의안번호 제2012 - 89 호>

##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. 11. 16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12. 11. 19

### 2. 제안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- (1) 법 제2조제4호 ⇒ 제2조제6호
  - (2) 법 제108조 ⇒ 제126조
- 나. 용어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순화함
- (안 제5조, 6조, 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- (1) ~규정에 의한 ⇒ ~에 따른      (2) 당해 ⇒ 해당
  - (3)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    (4) 자 ⇒ 사람

- (5) 지역안, 범위안 ⇒ 지역, 범위      (6) 인 ⇒ 명
- (7) 기타 ⇒ 그 밖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8) 월 ⇒ 개월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, 제126조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      의 :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
- 라. 예고기간 : 2012. 9. 10. ~ 9. 30. / 의견없음
- 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농어촌정비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인용하고,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조례로서
-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
  - 안 제1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
  - 안 제2조, 제3조, 제4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인용 정비하고
  - 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기관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변경
- 검토 결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와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## 6. 참고자료

##### 【농어촌 정비법】

[시행 2012.10.22] [법률 제11501호, 2012.10.22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7.14, 2012.2.17>

1. ~ 5. (생략)
6. "농업생산기반시설"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, 양수장(揚水場), 관정(관정: 우물) 등 지하수 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(取入洑)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(유지: 웅덩이), 도로(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농도(農道) 등 농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방조제, 제방(제방: 둑)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·가공·저장·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.
7. ~ 18. (생략)

**제126조(수리계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·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수리계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.

## 【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】

[시행 2012.5.18] [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3호, 2012.5.18, 일부개정]

**제63조(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)**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.

### 1. 수리계의 조직 기준

- 가.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
- 나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
### 2.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

- 가. 운영경비: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·관리비 전액
- 나.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: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- 다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: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(耐用年數)로 나눈 금액

### 3. 수리계의 해산 기준

- 가. 수혜지역이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
- 나. 수혜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
- 다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·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